종합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경상북도체육회 종합감사 –

2021. 6. .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처분요구일람표

1.	직원 근무평정 업무처리 소홀	(주의)	3
2.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주의)	6
3.	경북▷▷▷▷▷ 행동강령 위반자 조치 소홀	(주의)	9
4.	근로계약서 체결 업무처리 소홀	(주의)	12
5.	유류구매 및 공용차량 관리 부적정	(주의)	14
6.	임직원 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시정)	18
7.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부적정	(시정)	20
8.	물품관리 업무 소홀	(시정)	23
9.	연가사용 촉진 등에 관한 사항	(통보)	27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직원 근무평정 업무처리 소홀**

소 관 청 경상북도체육회

관 계 부 서 ○○○○부

내 용

「경상북도체육회 인사관리 규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직원의 평정은 근무성적평정(70점), 경력평정(30점)으로 구분하며 그 평정결과는 승진, 임용, 전보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사무직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은 12월 31일 기준으로 연1회 실시하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정기준일을 달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15조 및 제19조에 따르면 사무처 부장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사무처장이 평정자가 되고 상임부회장을 확인자로 하며, 과장이하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소속 부장이 평정자가 되고 사무처장을 확인자로 하도록 되어 있고, 평정자와 확인자의 평정결과는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확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르면 평정자는 매년 3월 15일까지 근무성적평정서를 작성하여 확인자에게 확인 후 7일 이내에 기획총무부장에게 제출하고, 기획총무부장은 근무성적 평정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조정을 거쳐 인사위원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르면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직원에 대하여 100점(근무성적평정점 70점, 경력평정점 30점)을 총평정점의 만점으로 하여

작성하고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작성기준일로부터 5급 직원은 최근 3년, 6급~9급 직원·기능직 직원은 최근 2년 내에 당해 직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명부는 승진사유가 발생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15일 이내에 회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상북도체육회에서는 12월 31일을 평정기준일로 하여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직원 근무평정을 실시하고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확정하여야 하며, 승진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최근 2년 내(5급의 경우 최근 3년)에 당해 직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승진인사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했다.

그런데 경상북도체육회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평정기준일(2019. 12. 31.)로부터 최장 467일이 경과한 감사일 현재(2021. 4. 12.)까지 직원들의 2020년도 근무평정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표 1] 연도별 직원 근무평정 실시현황

평정연도	평정기준일	평정대상 인원	평정실시 여부
2019년도	2018. 12. 31.	사무처 직원 ○○명 (4급 ○, 5급 ○, 6급 ○, 7급 ○, 9급 ○)	여
2020년도	2019. 12. 31.	사무처 직원 ○○명 (4급 ○, 5급 ○, 6급 ○, 7급 ○, 9급 ○)	부

그 결과 아래 [표 2]와 같이 직급승진(△△직 9급 → 8급) 승진후보자명부를 최근 2년 내(2019년~2020년) 근무성적평정점으로 작성하여야 함에도 2018년~2019년도 근무성적평정점으로 작성하여 2021. 2. 9. 2021년 제1차 인사위원회에 상정하는 등 인사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2] 2021년 제1차 인사위원회 심의안건

일 시	장 소	안 건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대상기간	적 정 대상기간
2021. 2. 9. 11:00	경상북도체육회 회의실	승진 3명 직급승진 (△△직 9급 → 8급)	2018~2019년	2019~2020년 (최근 2년간)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체육회장은**

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② ◈◈◈은 「사무처 운영규정」 제52조 및 「인사관리 규정」 제35조에 따라 **징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체육회

관 계 부 서 ○○○○부

내 용

경상북도체육회는「사무처운영규정」 및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1. 징계위원회 심의대상자 출석통지 부적정

「사무처운영규정」제52조 및 제98조에 따르면 징계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고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체육회 및 경상북도의 제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사관리규정」제38조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제4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징계 혐의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통지서로 하되, 심의·의결하기 위한 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그 징계 심의 대상자에게 도달하고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혐의자로 하여금 위원회가 언제 개최되는가를 알게 함과 동시에 본인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하게 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기한의 이익을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경상북도체육회에서는 경상북도종합감사 처분요구와 관련하여 2018. 12. 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관련 직원 AAA 등 심의대상자 5명에게 출석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수령증 등 증빙자료를 갖추지 않은 사실이 있다.

2. 징계위원회 회의록 미 작성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주요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회의록을 생산 또는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인사위원회 회의록에는 심의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 명단, 진행순서, 심의안건, 위원별 발언요지, 의결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했다.

그런데 경상북도체육회에서는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을 단 한 번도 작성하지 않음으로 심의·의결 내용 전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알 수 없도록 불투명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다.

3. 인사기록관리 및 서약서 미 징구 등

「사무처 운영규정」제55조에 따르면 불문경고를 포함한 모든 징계사항은 인사기록을 하고, 징계 처분한 기록을 토대로 징계말소 제한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징계 등 말소통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인사사무규칙」제5조 내지 제10조에 따르면 발령대장 등 인사기록을 작성·유지·보관하도록 되어 있고, 「인사관리 규정」제12조에 따르면 인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회의내용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상북도체육회에서는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된 사항은 인사기록카드에 등재하고, 비밀누설을 금지하는 서약서를 징구하고, 징계 종류별 말소제한기간에 따라 처분기록 말소대장을 작성하고 관리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경상북도체육회에서는 5회에 걸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도 인사위원회 위원들로부터 비밀누설에 대한 각서를 징구하지 않았고, 심의·의결로 처분을 받은 AAA 등 9명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인사기록카드에 징계기록을 등재하지 않았고, BBB 등 3명은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 하였는데도 이에 대하여 말소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체육회장은

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② ◈◈◈은 「사무처 운영규정」 제52조 및 「인사관리 규정」 제35조에 따라 **징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경북▷▷▷▷▷ 행동강령 위반자 조치 소홀**

소 관 청 경상북도체육회

관 계 부 서 ◇◇◇◇부

내 용

경상북도체육회는「내부감사규정」 및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경영관리체계를 점검하는 등 조직 내 모든 업무를 감사하고, 도종목단체, 시·군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에 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경상북도체육회 임직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르면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후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제8조에 따르면 임원은 자신의 가족과 수의계약 체결을 해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6조 내지 제27조의2에 따르면 임직원은 알선 · 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등에 대하여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기관의 장과 행동강령 책임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강령 제31조 내지 제33조에 따르면 감사담당 직원 등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임직원(퇴직자 포함)으로 의제되는 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회장 또는 사무처장에게 보고하고 고발하도록 되어 있다.

경상북도체육회에서 확인한 경북▷▷▷▷▷ 감사처분요구와 관련하여 진행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2016. 6. 국가 체육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경북▤▤▤▤▤과 경북▥▥▥▥▥▥ 통합 시 합의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탄원서와 2019. 3.

8. 경북▷▷▷▷▷(△△ KKK)으로부터 감사요청을 받아 2019. 4. 8.부터 같은 달 4. 10.까지(3일간) 감사반원(부장 HHH, 팀장 LLL, 과장 MMM) 3명을 편성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같은 해 9. 16.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하였다.

이후 같은 해 10. 21. 경북▷▷▷▷▷에서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재심의 이의신청을 하게 되었고, 경상북도체육회는 같은 해 11. 1. 재심의 이의신청 기한이 4일 초과되어 기각 하고, 11. 27. 기(旣) 특정감사 처분요구사항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재(再) 통보하였다.

그러나 경북▷▷▷▷▷에서는 관련자 회장 NNN(자격정지 6월), 사무국장 OOO(자격정지 3년)에 대한 중징계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2020. 5. 6. 경상북도체육회 제1차 이사회의에서 ▷▷▷ 종목단체 특별감사를 위한 감사반 편성을 의결하고, 감사결과 처분요구일로부터 8개월이 지난 시점인 2020. 5. 18. 감사반원(감사반장 △△ PPP, △△ QQQ·RRR, ◁◁ SSS) 4명을 구성하여, 기(旣) 특정감사 처분요구사항 이행여부 확인 건 중 미 조치 건인 '제◉◉회 ◍◍체육대회 장비지원금 정산 미흡'에 관하여 재확인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로 "경북▷▷▷▷▷ 소속 부회장 TTT가 2018년 경상북도체육회에서 지원한 ◍◍체육대회 장비구매(▩▩▩ 외 10개 품목)를 ◆◆◆◆◆◆◆(대표 UUU : TTT의 배우자)매장에서 7,750,000원을 결제한" 것을 인지하였고,

이러한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관하여「종목단체 특별감사 심의위원회 결과보고서, ◇◇◇◇부-30(2020. 6. 23.)호」를 작성하여 SSS, RRR, QQQ, PPP 감사위원 및 회장의 결재를 득하였다.

따라서 경상북도체육회에서는 행동강령책임자를 지정함은 물론, 행동강령 위반사실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경위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 후, 징계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경상북도체육회에서는 2020. 6. 23. 특별감사 결과보고 시점부터 현재까지 약 11개월간 행동강령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았고, 경북▷▷▷▷▷ 부회장 TTT에 대하여는 사직서 제출일(2020. 11. 30.)까지 조사·감사결과에 따른 징계요구 등 후속 조치를 이행 할 수 있는 약 5개월간의 충분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사직 수리가 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경북▷▷▷▷▷ 부회장 TTT는 피선거권에 대한 제재(制裁)를 받지 않고 2021. 1. 12. ◐◐시▷▷▷▷▷ 회장에 피선되었고, '경상북도체육회 봐주기 식 감사' 등으로 언론보도가 되어 대외적 신인도(信認度)를 실추시켰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체육회장은**

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② TTT(현, ◐◐시▷▷▷▷▷ 회장)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제25조 및 제27조 규정에 따라 **징계 등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③ 관련자 AAA과 BBB은 「사무처 운영규정」제52조 및 「인사관리 규정」제35조에 따라 **징계처분**하시기 바라며,

④ CCC와 DDD은 「인사관리 규정」제35조의2에 따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근로계약서 체결 업무처리 소홀**

소 관 청 경상북도체육회

관 계 부 서 ♣♣♣♣부

내 용

경상북도체육회는 경상북도체육회 ♨♨♨♨♨♨부와 경상북도로부터 위·수탁 협약을 통한 경상북도 ♨♨♨♨♨♨부를 운영·관리하고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률 제24조에 따르면 같은 법률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상북도체육회에서는 ♨♨♨♨♨♨부에 소속된 선수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기준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훈련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 등 복무에 관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했다.

한편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광역근로감독관 2명으로 임검반을 구성하여 2020. 9. 15.부터 10. 14.까지 30일간 경상북도체육회에 대한 노동관계법 임검을

실시하였고 임검결과 ♨♨♨♨♨♨부 소속선수 19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데 대한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 17,100,000원을 부과하였다.

그리고 경상북도체육회에서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시정지시에 따라 ♨♨♨♨♨♨부 소속선수 19명과 시정기한 전에 보완된 근로계약서로 재계약을 체결하고 2020. 12. 31. 과태료 8,550,000원(1/2 감경)을 납부하였다.

결과적으로 경상북도체육회에서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미숙지로 인한 근로계약서 체결 업무처리 소홀로 인해 아래 [표]와 같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과태료를 납부하여 경상북도체육회에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였다.

[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노동관계법 임검결과

구 분	임검기간	임 검 반	위반사항	임검결과
대구지방노 동 청	2020. 9. 15. ~ 10. 14. (30일간)	2명 (광역근로감독관)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사항 미 명시	시정조치(2020.11.23.까지), 과태료 17,100천원 부과 ※ 기한 내 시정 완료시 과태료 1/2감경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체육회장은

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② 관련자 EEE와 GGG는 「인사관리 규정」 제35조의2에 따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유류구매 및 공용차량 관리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체육회

관 계 부 서　○○○○부

내　　용

경상북도체육회는「국민체육진흥법」제18조 및「경상북도 체육진흥조례」제18조 규정에 따라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관서운영기본경비 등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공용차량 유류구매 부적정

「사무처 운영규정」제76조에 따르면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경상북도 재무회계규칙」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98조에는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경상북도의 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5]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에 따르면 각 기관에서는 차량용 유류를 구입할 경우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1]에서 구매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조달청에서는 석유제품의 구매력을 통합해 석유시장의 경쟁촉진과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1) 조달청에서 공개하는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App)을 통해 공공조달 납품주유소와 시중주유소의 유가 확인이 가능

위해 공공부문 차량용 유류(휘발유, 경유) 등에 대해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 공급하면서, 2016. 1. 1.부터 2019. 1. 31.까지는 ♣♣♣♣♣♣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5.74%, 2019. 2. 1.부터는 ☆☆☆☆☆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시중 주유소의 판매단가보다 3.99%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받도록 하면서 적립된 포인트는 6개월마다 각 기관에서 신청 시 지정계좌로 환급(세입)조치하고 있다.

따라서 경상북도체육회에서는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여 유류구매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경상북도체육회에서는 2016. 1.부터 2020. 12.까지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신청·발급하지 않고, 특정 주유소에 비치된 수기 장부에 일자별 주유 금액만 기재하고, 주유량(L)에 대한 기록도 없이 거래 주유소에서 청구한 자료를 그대로 인정하여 일반 법인카드(체크카드)로 차량 유류구입비 총 66,340천 원을 지출하였다.

그 결과 아래 [표 1]과 같이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할 경우 할인 받을 수 있는 3,491천 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하지 못했다.[2)]

[표 1]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할 경우 할인 받을 금액 내역

조달계약 유류 공급처	리터(L) 당 할인율(%)	유류구매 이용기간	유류구입 누적금액(원)	할인금액(원)	비 고
계			66,340,130	3,491,290	
♣♣♣♣♣♣	5.74	2016.1.1.~ 2019.1.31	48,247,130	2,769,380	전국단위 주유소에서 구입가능
☆☆☆☆☆	3.99	2019.2.1.~ 2020.1.30	18,093,000	721,910	

2) 신용카드로 특정 상품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손님에게 되돌려 주는 돈으로 캐쉬백(cash·back) 포인트(1리터당 1.1%) 발생부분은 미반영

2. 공용차량 유류수불부 등 기록관리 부적정

「경상북도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23조 내지 제26조에 따르면 공용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고, 차량배차 시 전회 지급 유류의 소모량을 정산하고,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 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 량을 기록하여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칙 제27조에는 보유차량에 대하여 차량배차신청(승인)서, 차량 유류수불대장, 차량운행일지, 차량이력카드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단위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용차량을 사용할 경우에는 배차신청을 하여야 하고, 유류의 제고량과 소모량을 정산하고, 차량정비 및 운행기록 등 기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했다.

한편 2020. 5. 15.부터 같은 해 5. 18.까지(4일간) 도(道) ♧♧♧♧과에서는 (점검반장 VVV 등 5명) 경상북도체육회에 대하여 도체육회 현안사항을 특별점검.[3)]하고 '공용차량 운행일지 기록사항을 누락하고 연필로 운행기록을 기재하는 등' 불투명한 차량운행 관리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그런데 경상북도체육회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공용차량을 사용하면서 유종별 주유량과 운행거리(일계/누계)를 작성하지 않고, 차량배차신청(승인)과 차량정비 이력을 단 한 번도 기록하지 않는 등 공용차량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3) 도 ♧♧♧♧과-4695(2020.06.04.)호「도체육회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통보

[표 2] 경상북도체육회 공용차량 관리현황(2018. 1. 부터 2021. 3. 까지)

연번	차량명	차량번호	구입일자	운행거리 일계/누계	유류 주입량	배차 승인여부	비고
1	그랜저IG	03호○○○○	2018.07.16	미기록	미기록	미승인 운행	임차(○○렌탈)
2	뉴카니발	128호○○○○	2019.12.30				임차(○○렌탈)
3	포르테	20수○○○○	2009.02.26				
4	싼타페	68누○○○○	2008.12.15				
5	카니발	79나○○○○	2009.02.27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체육회장은**

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② 아래 관련자 ◆◆◆은 「사무처 운영규정」 제52조 및 「인사관리 규정」 제35조에 따라 **징계처분** 하시기 바라며,

③ HHH는 「인사관리 규정」 제35조의2에 따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임직원 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체육회

관 계 부 서 ○○○○부

내 용

경상북도체육회는「국민체육진흥법」제18조 및「경상북도 체육진흥조례」제18조 규정에 따라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관서운영기본경비 등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무처 운영규정」제67조 내지 제69조에 따르면 직원의 국내 및 국외여비에 관해서는 공무원 여비규정 및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하여 실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경상북도 공무원 여비 조례」제4조 및 제5조와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르면 출장비 중 자동차 운임은 실비를 지급하고 동승자에 대해서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또한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금액을 환수하고, 부정수령 환수금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 하도록 되어 있고, 「경상북도체육회 임직원행동강령」제11조에 따르면 임직원은 출장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상북도체육회에서는 임·직원의 출장비 중 자동차 운임은 동승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야 했다.

그런데 경상북도체육회는 아래 [표]와 같이 교통 운임 경비가 발생하지 않은 자동차 동승자에게 8건, 93,200원의 교통비를 부당하게 지급하였다.

[표] 차량 동승자에 대한 출장비 지급 내역

연도별	출장 일자	출장목적	장소	성명	총지급 출장비	교통비지급액 (부당수령액)	가산 징수액	총 징수액
2018	02.25	경북체육회 ☆☆팀(국가대표)응원	◆◆	www	51,400	11,400	22,800	34,200
2018	02.25	경북체육회 ☆☆팀(국가대표)응원	◆◆	HHH	51,400	11,400	22,800	34,200
2018	02.25	경북체육회 ☆☆팀(국가대표)응원	◆◆	FFF	51,400	11,400	22,800	34,200
2018	02.25	경북체육회 ☆☆팀(국가대표)응원	◆◆	BBB	51,400	11,400	22,800	34,200
2018	02.25	경북체육회 ☆☆팀(국가대표)응원	◆◆	YYY	51,400	11,400	22,800	34,200
2018	02.25	경북체육회 ☆☆팀(국가대표)응원	◆◆	III	51,400	11,400	22,800	34,200
2018	02.25	경북체육회 ☆☆팀(국가대표)응원	◆◆	DDD	51,400	11,400	22,800	34,200
2018	05.11	제○○회 경북○○체육대회물품회수	□□	EEE	53,400	13,400	26,800	40,200
	총 계	8건			413,200	93,200	186,400	279,600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체육회장은

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② 차량 동승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가산징수금액 포함) 출장여비 279,600원을 환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③ 관련자 JJJ는 「인사관리 규정」 제35조의2에 따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체육회

관 계 부 서　☆☆☆☆부

내　　용

경상북도체육회 「사무처 운영규정」 제67조에 따르면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경상북도 재무회계규칙」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98조에 따르면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체육회·국가공무원 및 경상북도의 제규정(예산, 회계, 인사포함)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 제75조에 따르면 세입세출외현금은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등 기타(사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구분에 따라 정리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훈령 제86조 및 제139조에 따르면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금을 출납할 때마다 명확히 이를 현금출납부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훈령 제77조에 따르면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한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상북도체육회에서는 위 규정을 준용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를 비치하여 현금을 출납할 때마다 명확히 이를 기재하고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등

기타의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 관리하여야 했으며, 5년 동안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세입처리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경상북도체육회에서는 2019년 이전의 세입세출외현금의 입출금 내역은 관리하고 있지 않았고, 2019년부터 관리하고 있는 입출금 내역에도 일부 사항을 잘못 기재하거나 누락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실제 통장의 잔고보다 1,086,690원을 적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파악하고 있었다.

[표 1] 세입세출외현금 통장 잔고와 장부상 잔액 불일치 내역

(단위 : 원)

연 도	불일치 금액	불일치 사유	비 고
	1,086,690		
2019	167,200	기타소득세(83,600원) 수입 건을 지출로 잘못 입력	
2021	919,490	보험료 등(919,490원) 지출 장부기입 누락	

또한 아래 [표 2]와 같이 감사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세입세출외현금 잔액 중 16,345,774원은 발생원인을 알 수 없어 장기간 보관 중에 있는 등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업무에 부적정한 사실이 있다.

[표 2] 세입세출외현금 잔액 현황

(단위 : 원)

통장 잔액 (2021. 4. 12. 기준)	내 역		비 고
	적 요	금 액	
375,258,394	합 계	375,258,394	
	○○팀 퇴직금	154,292,000	
	♨♨♨팀 퇴직금	179,141,310	
	□□□ 퇴직금	20,087,310	
	♧♧팀 퇴직금	5,392,000	
	발생원인 미상	16,345,774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체육회장은

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②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장부를 비치·작성하시기 바라며, 장기간 보관 중인 세입세출외 현금은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시정)**

③ 관련자 BBB은 「사무처 운영규정」 제52조 및 「인사관리 규정」 제35조에 따라 **징계처분** 하시기 바라며,

④ KKK은 「인사관리 규정」 제35조의2에 따라 **주의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물품관리 업무 소홀**

소 관 청 경상북도체육회

관 계 부 서 ○○○○부, ◇◇◇◇부 등

내 용

경상북도체육회는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사무집기 및 각종 체육대회에서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경기용 운동기구 등의 물품을 취득·관리하고 있다.

「사무처 운영규정」 제93조에 따르면 경상북도체육회의 물품관리는 「경상북도 물품관리조례」와 「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를 따르도록 되어 있다.

1. 물품관리관 등 미지정

「경상북도물품관리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모든 물품은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물품관리관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물품출납원과 물품운용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물품관리관 등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르면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취득시에는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 등을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상북도체육회에서는 물품관리관을 지정하고 연도말 현재량과 다음 연도 분기별 예정수량 및 소요예산과 전년도 실적을 기재한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물품관리관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와 물품매입의 필요성 및 용도, 적정수량 등을 심사한 후 물품을 취득·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경상북도체육회에서는 감사일 현재(2021. 4. 12.)까지 ◈◈처 및 ♨♨♨♨♨부의 물품관리관을 지정하지 않고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 없이 물품을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다.

2. 물품 재물조사 미실시 등 관리 소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정기적으로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재물조사 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서는 재물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재물조사 지침」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2020년 재물조사 지침」에 따르면 재물조사 결과 수리가 가능한 물품은 수리하여 사용하고 불용처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불용결정 승인을 받은 후 불용품 목록에 등재하여 감정평가 등을 거쳐 매각하거나 폐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상북도체육회에서는 2년마다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보유 물품에 대한 운용상태, 수량의 변동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조사결과 비활용품에 대해서는 대부 또는 양여, 매각 등 조치로 물품의 활용도를 제고하여야 했다.

그런데 경상북도체육회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2017년부터 감사일 현재(2021. 4. 12.)까지 정기재물조사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고 내용연수가 지난 물품 및 노후·파손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은 매각이나 폐기처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아래 [표 2]와 같이 훈련장, 숙소 등에 방치되어 있고 일부 물품의 경우에는 보관여부 조차 확인되지 않는 등 물품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1] 정기재물조사 실시 현황

연도별	부서별	재물조사 실시여부	비 고
2017년	◆◆처, ㅥㅥㅥㅥㅥㅥ부	부	
2018년	◆◆처, ㅥㅥㅥㅥㅥㅥ부	부	
2019년	◆◆처, ㅥㅥㅥㅥㅥㅥ부	부	
2020년	◆◆처, ㅥㅥㅥㅥㅥㅥ부	부	

[표 2] 주요 물품 관리실태

구 분	부서별	물품명	수 량	취득단가(원)	구입금액	물품상태	취득일	보관장소
ㅥㅥㅥㅥ ㅥㅥ부	ㅂㅂ팀	캠코더	1	2,500,000	2,500,000	불 량	2003. 3.	훈련장
		노트북	1	869,000	869,000	불 량	2009. 8.	숙 소
		TV	1	2,490,000	2,490,000	양 호	2015. 3.	숙 소
	▨▨▨팀	모노핀	5	1,100,000	5,500,000	확인불가	2006. 3.	확인불가
		모노핀	10	1,200,000	12,000,000	확인불가	2014. 3.	확인불가
		모노핀	10	1,200,000	12,000,000	확인불가	2016. 2.	확인불가
	▦▦팀	모터보트	1	45,000,000	45,000,000	모노핀	2003. 7.	▣▣경기장
		470er-요트	1	32,300,000	32,300,000	불 량	2007. 9.	▣▣경기장
		드라이슈트	3	1,500,000	4,500,000	확인불가	2011. 4.	확인불가
	◉◉팀	에르고미터	2	2,000,000	4,000,000	확인불가	2005. 12.	확인불가
		다이노	2	2,500,000	5,000,000	불 량	2005. 12.	♡♡훈련장
		에어컨	1	1,450,000	1,450,000	확인불가	2006. 7.	확인불가
		스컬오르	8	1,150,000	9,200,000	불 량	2018. 3.	★★훈련장
	□□ □□□팀	지주	1	2,500,000	2,500,000	확인불가	2004. 3.	확인불가
		세탁기	2	335,000	670,000	불 량	2011. 3.	숙 소
	☆☆팀	냉장고	1	750,000	750,000	폐 품	2006. 4.	숙 소
		에어컨	1	1,225,000	1,225,000	폐 품	2006. 4.	숙 소
		권총	3	1,780,000	5,340,000	폐 총	2006. 4.	훈련장
		엽총	1	8,900,000	8,900,000	폐 총	2011. 2.	훈련장
	ㅥㅥㅥ팀	트랙완성차	1	14,300,000	14,300,000	폐 품	2015. 7.	숙 소
◆◆처	◆◆처	복사기	1	6,930,000	6,930,000	양 호	2016. 12.	사무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체육회장은

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② 재물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내용연수가 지난 물품 및 노후·파손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은 매각이나 폐기처분 등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통 보

제 목 **연가사용 촉진 등에 관한 사항**

소 관 청 경상북도체육회

관 계 부 서 ○○○○부

내 용

경상북도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및 「대한체육회 정관」 제7조에 의거 설립된 단체로 소속된 직원 등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으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도록 되어 있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1조, 제62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였으며,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휴가 소멸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 서면으로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되어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에 의거 발생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에 대하여는 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하고,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전해야 한다.

그런데 경상북도체육회에서는 연가사용 촉진 등의 노력과 연차수당 미지급에 따른 사후대응에 대한 검토 없이, “경상북도체육회 조직개편 및 직급호봉 조정”을 통해 조직 안정화를 위한 각종 수당 등의 삭감을 직원 동의를 얻어 결정하였다.

그 결과 상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와 같이 2020. 11. 3.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에서 시정지시를 받아, 총 24명분 49,175,398원의 연차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미지급 연차수당 지급내역

점검기관	점검기간	대상기간	미지급 연차수당			
			구 분	미지급인원(명)	미지급일수(일)	소급지급액(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	2020. 9. 15. ~ 2020. 10. 30.	2019. 9. ~ 2020. 8.	합 계	24	262.375	49,175,398
			퇴직자	3	35	5,990,784
			재직자	21	227.375	43,184,614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체육회장은**

일·가정의 균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